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
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원기관에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”를 “다음 각 호의 업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
2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<u>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실적 통보의 접수</u> 를 말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④ (생략)	제12조(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/u> 1. <u>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</u> 2. <u>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실적 통보의 접수</u>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984